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가치평가 사업 안내

KAIA's Technology Valuation

KAIA's Technology Valuation

기술가치평가 개요

■ 목적

-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경제적 가치(화폐, 등급, 점수로 표현)로 변환하여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함

■ 법적근거

-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-680호)

■ 대상기술

-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의 기술
- 「지식재산기본법」제3조의 기술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14조의 건설신기술
-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 교통신기술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에 따라 개발된 기술
- 「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」에 따라 개발된 기술 등

■ 평가의 용도

- 기술이전 및 거래, 금융, 현물출자, 전략수립, 청산, 소송 및 세무 등

■ 국토교통 기술가치평가의 특징

- 국토교통 분야 유일한 R&D 전담기관에 의한 공신력 있는 평가 가능
- 국토교통 업종에 특화된 기술가치평가 모델 적용
 - *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술분류체계, 평가요인별·핵심변수별 평가지표 등
-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한 평가위원 운영

■ 기술가치평가 인력 구성

- 내부인력
 - : 박사급 전문 인력 38명, 기술거래사 6명, 변호사 1명, 기술사 5명, 기술가치평가사 10명 등
- 외부 평가위원 POOL
 - : 기술성 위원 587명, 권리성 위원 16명, 시장성·사업성 위원 40명 등
 - * R&D 평가위원 6,085명, 건설신기술 심사위원 3,829명, 교통신기술 심사위원 3,570명 활용 가능

기술가치평가 절차



■ 제출서류

- 기술가치평가 신청서 원본 1부 및 사본 7부
-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
- 국제회계기준(IFRS)에 따른 재무상태표 사본 8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인감증명서(개인, 법인),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

■ 제출방법

- 사전 상담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(www.kaia.re.kr)

■ 문의처

- 일자리·사업화지원실/ 031-389-6371